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보

선람	기관의 장

제199호 2020. 4. 6.



회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45호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2446호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5

고 시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 13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6일

청양군 조례 제2445호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4월　6일

청양군 조례 제2446호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청양군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과장이 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팀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고시 제2020-23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청 양 군 수 ㊞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금정2지구, 화양1지구, 안심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1)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8번지 외 298필지 / 195,834㎡
   2) 청양군 목면 화양리 276번지 외 474필지 / 507,931㎡
   3) 청양군 목면 안심리 134-3번지 외 317필지 / 166,122㎡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 해당없음